

영등포구의회
제161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7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64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 및 상담,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- 마.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.
- 사.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문화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명칭, 기능, 시설, 조직, 위원회 운영,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활용, 지도감독, 비용지원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이혼,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되고 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

- 이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164백만원(센터 운영비 등)

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: 중구 외 22개 자치구

관 련 법 령

■ 건강가정기본법

제35조 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-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05.3.24, 2008.2.29, 2010.1.18>
- ④ 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, 2008.2.29, 2010.1.18>

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

제14조 (시·도 및 시·군·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

-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- ②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